



제18011호 2013. 5. 7.(화)

##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04호(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개정령)..... 3

## 【고 시】

- 환경부고시제2013-47호(201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 4
-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4호(청소년유해매체물)..... 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5호(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1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7호(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세목) ..... 1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8호(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세목) ..... 13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국적상실)..... 14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4호(국적상실)..... 15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4호(국적상실) ..... 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2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 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3호(아라천 유지·보수 수탁기관 지정)..... 1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5호(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 1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6호(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 17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7호(도로구역결정<변경>) ..... 1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8호(접도구역지정<변경>) ..... 2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9호(지형도면<변경>) ..... 22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3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2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8호(하천수사용 허가) ..... 23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9호(하천수사용 허가) ..... 23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0호(하천수사용 허가) ..... 24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1호(하천수사용 허가) ..... 24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2호(하천수사용 허가) ..... 25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하천수사용 허가) ..... 25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하천수사용 허가) ..... 25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26

(이면 계속)

##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4호(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7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1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	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8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63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31호(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	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5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2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9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3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5호(201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	34
○문화재청공고제2013-164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제주흑우>) .....	4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41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	40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2호(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 .....	46

## 【법 원】

○판결(전주지방법원) .....	47
-------------------	----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14호(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80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50호(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 승인) .....	82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66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	85
○경기도공고제2013-605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85

## 【상 훈】

○서훈(국토교통부) .....	85
------------------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	86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	87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87

# 국무총리훈령

## ●국무총리훈령 제604호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7일

국무총리 인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개정령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을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계획수립사항: 구체성이 있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사항
- 2. 검토이행사항: 계획수립사항에 준하여 조속한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달(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의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을 “시달(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모든 계획수립사항의 지시순서”를 “지시순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발령 당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지시사항의 관리번호를 종전에는 계획수립사항에만 한정하여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이행사항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 시

## ●환경부고시제2013-4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과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1조의4에 따라 201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201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000으로 한다.

2013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0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부고시 제2013호-26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285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스타 동영상] 노출은꼴사 무료버전’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스타 동영상] 노출은꼴사 무료버전’ 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5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레이싱모델]각선미무료화보은꼴사'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레이싱모델]각선미무료화보은꼴사'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5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모델급야한몸매]은꼴화보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모델급야한몸매]은꼴화보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5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은꼴야한팡♥]무료영상노출화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은꼴야한팡♥]무료영상노출화보'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5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리얼영상노출은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리얼영상노출은꼴'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신선한야한은꼴자료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신선한야한은꼴자료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야한예쁜그녀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야한예쁜그녀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리얼베스트은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리얼베스트은꼴'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화끈영상수위강한은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화끈영상수위강한은꼴'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2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고은꼴모음야한그녀영상입니다'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고은꼴모음야한그녀영상입니다'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3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은꼴무료화보모음집'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은꼴무료화보모음집'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3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강한섹시스타일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강한섹시스타일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3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야한섹시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야한섹시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쿨한그녀의야한섹시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쿨한그녀의야한섹시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6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엄선은꼴노출모음그녀들의일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엄선은꼴노출모음그녀들의일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김모양의야한리얼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김모양의야한리얼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그녀의노출이야기'무료영상화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그녀의노출이야기'무료영상화보'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넷모음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넷모음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한그녀들의베스트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한그녀들의베스트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3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리얼야한은꼴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리얼야한은꼴영상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4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영상최강야동인은꼴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영상최강야동인은꼴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4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심야영상섹시은꼴자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심야영상섹시은꼴자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4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김양노출영상모음최신자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김양노출영상모음최신자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4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여친몰래 즐기는섹시은꼴화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여친몰래 즐기는섹시은꼴화보' 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7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베스트 야한노출자료은꼴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베스트 야한노출자료은꼴모음'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글래머모델 은밀한화보집'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글래머모델 은밀한화보집'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추최강 누나들의은밀한은꼴 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추최강 누나들의은밀한은꼴 영상'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스타영상 무료노출은꼴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스타영상 무료노출은꼴사' 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야한섹시 영상모음강추'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야한섹시 영상모음강추'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4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야한밤깊은 영상은꼴모음강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야한밤깊은 영상은꼴모음강추' 애플리케이션	라운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싱싱성인보다 짜릿한즐거움 주는 은꼴앱'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싱싱성인보다 짜릿한즐거움 주는 은꼴앱'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생생성인 영상보다뛰어난무료 은꼴노출앱'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생생성인 영상보다뛰어난무료 은꼴노출앱'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은밀한그녀 노출영상무료은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은밀한그녀 노출영상무료은꼴'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한섹시녀 노출화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한섹시녀 노출화보'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8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노출영상 무료은꼴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노출영상 무료은꼴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한섹시영상길거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한섹시영상길거리'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은밀한 그녀들의야한밤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은밀한 그녀들의야한밤영상'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개인비서 야한일상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개인비서 야한일상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별난은꼴 영상야한자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별난은꼴 영상야한자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5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은꼴 영상자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은꼴 영상자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몰래보는 야한은꼴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몰래보는 야한은꼴영상'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 야동인모음은꼴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최강노출 야동인모음은꼴사'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노출 영상은꼴자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노출 영상은꼴자료'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야한소라 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야한소라 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89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의노출 모음야한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의노출 모음야한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증그녀들의은꼴스토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증그녀들의은꼴스토리'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6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여친야동인스토리는꿀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여친야동인스토리는꿀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6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밤최강스타일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밤최강스타일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6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섹시한비서야한일상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섹시한비서야한일상영상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6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노출야한베스트영상강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노출야한베스트영상강추!'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베스트야한영상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베스트야한영상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최강베스트야한모음영상은꿀자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최강베스트야한모음영상은꿀자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노출강한야동인미녀스타일'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노출강한야동인미녀스타일'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밤예쁜누나들의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밤예쁜누나들의은꿀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0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최강미녀베스트야동인노출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최강미녀베스트야동인노출영상'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핫한스타일베스트노출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핫한스타일베스트노출영상'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스타일그녀은꿀자료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 내 '야한스타일그녀은꿀자료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노출야한스타일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노출야한스타일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그녀야한노출야동인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그녀야한노출야동인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7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한비주얼야한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강한비주얼야한노출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느낌있는최강야동인스타일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느낌있는최강야동인스타일모음'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야한스타일은꿀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베스트야한스타일은꿀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화성인노출모음은꿀스토리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화성인노출모음은꿀스토리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나라은꿀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소라나라은꿀모음'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1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스타은꿀자료노출화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스타은꿀자료노출화보'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케이스타노출영상은꿀화보'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케이스타노출영상은꿀화보'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동인모음은꿀영상'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동인모음은꿀영상'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동인스토리는꿀모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노출야동인스토리는꿀모음'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3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노출몸매초회]무료영상은꿀'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섹시노출몸매초회]무료영상은꿀'애플리케이션	지앤지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3-27-189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4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야한밤에 은꼴영상노출화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야한밤에 은꼴영상노출화보'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0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5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즐거운상상노출영상은꼴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즐거운상상노출영상은꼴모음'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1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6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최강노출몸매]무료은꼴그녀들'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최강노출몸매]무료은꼴그녀들'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2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7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강추노출 모델야한글래머은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강추노출 모델야한글래머은꼴' 애플리케이션	지앤지 커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3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8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노출야한 은꼴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노출야한 은꼴영상' 애플리케이션	YS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4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29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즐오/밤문화/업소/유홍/폴싸롱/립카페/키스방/접대/회식'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즐오/밤문화/업소/유홍/폴싸롱/립카페/키스방/접대/회식' 애플리케이션	오리 커뮤니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5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30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접대의달인'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접대의달인' 애플리케이션	휴데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6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31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대전성인 놀이터'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대전성인 놀이터' 애플리케이션	kimminsu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7	2013-04-18	선정성	2013-05-07
2013-2932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밤문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e.com)내 '밤문화' 애플리케이션	퍼스트앱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27-198	2013-04-18	선정성	2013-05-0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5호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 1. 목 적

- 광역적인 지하수 변동실태 관측 및 지하수 장애감시
-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초수문자료 획득 및 정책자료 제공

2. 개 요

-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전국 530개소 설치
  - 기 설치완료 국가관측망 : 361개소(2012년말 기준)
  - 설치예정 국가관측망 : 169개소
- 설치 기간 : 2021년 까지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국토교통부 장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위 치

-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산출특성, 이용특성, 수문지질단위, 표준유역 등으로 구분·분류하여, 530개소 설치 (상세위치는 고시전문 참조)

4. 설치 시설

- 관측정

관 측 정	심 도	굴착 구경	케이싱 구경
암반층 관측정	약 100m	상부미고결암층 : 300 mm 하부암반층 : 200 mm	외부케이싱 : 200 mm 내부케이싱 : 150 mm
충적층 관측정	약 18m	상부층 : 400 mm 하부층 : 300 mm	외부케이싱 : 300 mm 내부케이싱 : 200 mm

- 보호 시설물 : 지역 조건상 소규모건축물 또는 외장형 단자함으로 설치



<소규모 건축물>



<외장형 단자함>

- 자동 관측장비 : 관측센서 및 본체부, 자료전송장치 등

5. 관측 항목

- 수위·수온·전기전도도 : 1시간 간격 자동관측
- 수질검사 : 지하수 생활용 기준 19개 항목 연2회 실시

6. 고시전문 및 관련자료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한국수자원공사
  - 홈페이지 및 전화 : www.gims.go.kr , 042)629-4171~2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09.10)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사

◆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62-27 (962-11)	구거	3,642	1,292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62-35 (962-27)	구거	1,346	54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657-4 (657)	구거	4,418	169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256-1 (256-1)	답	245	245	김정갑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6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7호(2013.0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사

◆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충주시 엄정면 울능리	78-10 (78-10)	전	642	642	국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	편집 면적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50-3 (산50-3)	임	96	96	국	국토해양부			
3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41-9 (산41-2)	구	948	72	농업기반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4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41-10 (산41-10)	임	40	40	국	국토해양부			
5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227-6 (227-6)	답	36	36	국	국토해양부			
6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256-4 (1256-4)	전	138	138	국	국토해양부			
7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235-2 (1235-2)	전	152	152	국	국토해양부			
8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234-4 (1234-4)	전	406	406	국	국토해양부			
9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산37-87 (산37-87)	임	2760	2760	국	산림청			
10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517-19 (517-19)	도	443	443	국	산림청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장규	1938.08.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97-53	2001.10.18	외국국적취득
문영숙	1962.06.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49	1999.04.21	외국국적취득
강준계	1956.08.0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70-1	2005.04.05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82.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12	2007.09.21	외국국적취득
쩌우위평	1959.01.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58	2013.03.0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경옥	1947.02.07	여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408	2000.04.07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82.10.1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843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38.12.1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5	2008.09.1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허의회	1957.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28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85.04.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83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안	1980.02.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3-32	2012.11.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순재	1964.01.26	남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5-14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임채용	1981.03.0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0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주의숙	1954.04.02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13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향희	1947.03.11	여	독 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431	1981.03.0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명옥	1969.10.06.	女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으로 596의 11	2008.10.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9호(2007. 2. 21.), 제2007-20호(2007. 6. 21.) 제2008-282호(2008. 12. 12.), 제2009-93호(2009. 4. 27.), 제2011-167호(2011. 6. 2.), 제2011-317호(2011. 11. 18.),제2013-88호(2013. 0. 26.),제2013-90(2013. 4. 4.)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중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48호선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2.7km	신봉리,부근리, 솔정리,대산리, 옥림리,갑곶리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7년 3월 ~ 2015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032-932-88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3호

아라천 유지·보수 수탁기관 지정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아라천 유지·보수 업무의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 대표자 : 김건호 사장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하는 업무의 내용

- 아라천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보고
- 아라천 시설물(제방·호안, 홍수조절시설,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도로,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 서해배수문, 굴현보 운영 등 유량 수위 조절 시설 운영
-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 시설물 수문 운영 및 유지관리
-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을 위한 전산모형 개발 및 개선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아라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 기타 아라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3. 수탁기간

- 아라천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73호('09.03.09.) 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논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논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없음)

-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 개선, 자정력 증대, 수질개선
- 하천의 환경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 나. 개 요(변경)

(당초) 축제 L=8,924m, 고수호안 L=8,924m, 저수호안 L=2,520m, 교량2개소  
조경공 1식, 부체도로 4개소, 부대공 1식

(변경) 축제 L=8,924m, 고수호안 L=8,924m, 저수호안 L=2,295m, 교량2개소  
조경공 1식, 부체도로 4개소, 부대공 1식

##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지내
-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지내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2009. 2. ~ 2013. 2.
- (변경) 2009. 2. ~ 2014. 12.

##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2012년까지	2013년	장래
금강살리기 논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량 (변경없음)	m	8,924 조경공사1식	8,599 조경공사1식	- 조경공사1식	325 조경공사1식
	사업비 (당초)	백만원	45,900	45,900		
	사업비 (변경)		31,218	20,548	6,297	4,373

##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2009. 2. ~ 2013. 2.
- (변경) 2009. 2. ~ 2014. 12.

##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6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74호('09.03.09.)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없음)

-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 개선, 자정력 증대, 수질개선
- 하천의 환경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나. 개 요(변경)

(당초)축제 L=6,187m, 호안 L=6,187m, 보도교 7개소, 교량 1개소

배수구조물 14개소, U형측구 L=1,282m, 가동보 1개소, 생태습지 1식  
조경공 1식, 부체도로 17개소, 부대공 1식

(변경)축제 L=6,187m, 호안 L=6,187m, 보도교 7개소, 교량 1개소

배수구조물 14개소, U형측구 L=1,759m, 가동보 1개소, 생태습지 1식  
조경공 1식, 부체도로 25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강경천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산리지내
- 대홍천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지내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당초)2009. 2. ~ 2013. 2.

(변경)2009. 2. ~ 2014. 12.

6.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2012년까지	2013년	장래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량 (변경없음)	m	6,187 보도교 7개소	4,284	651 보도교3개소	1,252 보도교4개소
	사업비 (당초)	백만원	43,367	43,367	-	-
	사업비 (변경)	백만원	31,968	22,479	4,129	5,360

9. 공사에정공정표(변경)

(당초)2009. 2. ~ 2013. 2.

(변경)2009. 2. ~ 2014. 12.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유지·보수)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금강살리기 강경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지 적		편 입 지 번	편 입 면 적	지 분	소 유 자		
번 호	면,동,리	지 번		(㎡)	포 락				비포 락	성 명	주 소
1	논산 채운 삼거	468-2	답	3,443.0		3,443.0	468-7	486.0	1	최병길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31-1
2	논산 채운 삼거	468-3	답	3,420.0		3,420.0	468-8	38.0	1	최병길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3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의 추가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 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중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54(도)	0.2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전용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도) 중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0.28	서산시 대산읍		29,38,77 호선 중복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중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통정리 1016-19(전)	13.58	서산시 대산읍 당진군 석문면		38,77호선 중복
변 경 구 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중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64(도)	0.2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 -토지 추가	전용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도) 중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0.28	서산시 대산읍		29,38,77 호선 중복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중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통정리 1016-19(전)	13.58	서산시 대산읍 당진군 석문면		38,77호선 중복

2. 사업시행기간 : 2007. 11. ~ 2014. 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산77-60	임	136,594	산72-68	39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산77-63	임	232,145	산72-69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03-27	접	4,523	503-42	557		국토해양부				
산72-63	임	236,773	산72-66	4,060		국토해양부				
			산72-67	568		국토해양부				
503-24	잡	7,617	503-41	316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194-12				
205-7	임	2,208	205-13	479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아파트 1동 901호				
458-45	임	7,970	458-48	361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아파트 1동 901호				
			458-49	112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아파트 1동 901호				
458-44	임	16,529	458-47	685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94 대림가락아파트 2-406				
458-46	임	8,265	458-50	36		국토해양부				
204-10	임	3,102	204-15	5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135동 801				
			204-16	36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135동 801				
204-12	임	4,588	204-17	63		국토해양부				
			204-18	131		국토해양부				
204-14	임	14097	204-19	240	1/3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피엘116 라파엣파크 435				
					1/3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4-503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3동 7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099-49	임	4,181	1099-68	779		국토해양부				
1099-46	임	5,022	1099-67	756	11223/58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2905				
					46890/58113	국토해양부				
1103-27	임	5,761	1103-29	373	11223/58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2905				
					46890/58113	국토해양부				
1103-15	임	2,062	1103-28	75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0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3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보령~서산)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종점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93-2(제)  (28.86km)	
	변경구역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종점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93-2(제)  (28.86km)	
	변경사유	○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 - 추가 토지 편입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협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 고시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64(도)	0.2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24-3(도)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0.28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802-5(도) 종점 : 충남 당진군 석문면통정리 1016-19(전)	13.58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변경 없음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공항기상라이다 (LIDAR) 신설 다) 사업의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Middle AMOS 부근	변경 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윈드시어와 마이크로버스트를 탐지를 위한 LIDAR 설치로 항행안전성 확보 및 항공기상관측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나) 사업의 내용 -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1식	변경 없음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 : 2012. 11. ~ 2013. 4. 나) 사업방법 :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가) 사업기간 : 2012. 11. ~ 2013. 5. 나) 사업방법 :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없음	변경 없음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해당 없음	변경 없음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8호

####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하회리 321-2 일원(가현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8.11㎡
7. 허 가 량 : 2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1.3mX7.7m) 집수정(2mX4m) 집수정(3.5mX3.6m) 흡입관(Φ500m/mX1대)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9호

####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테리 133번지 일원(매호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2.05㎡
7. 허 가 량 : 7,2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8.6X6.6m) 집수정(2.3X2.3m)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모리 428-3번지 일원(모리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9.08㎡
7. 허 가 량 : 1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8mX6.7m) 집수정(1.8mX8.6m)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4-1번지 일원(오서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7.64㎡
7. 허 가 량 : 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3mX4.7m) 집수정(1.8mX1.3m)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산123번지(초계1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83.2m<sup>2</sup>
7. 허 가 량 : 56,500m<sup>3</sup>/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식, 집수정 1식, 500HPx600mmx1기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750번지 일원(초계3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3.26m<sup>2</sup>
7. 허 가 량 : 23,000m<sup>3</sup>/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8mX5.7m) 집수정(4.1mX4.3m)(3.5mX2.0m) 파이프(Φ400mmX9m) 파이프(200m/mX11.5m)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86-1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주)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제9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33-14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29-3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3m<sup>3</sup>/일
7. 허가면적 : 23m<sup>2</sup>
8. 허가기간  
(당초) 2011. 11. 22. ~ 2013. 4. 26.  
(변경) 2013. 4. 27. ~ 2014. 12. 20.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TON)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273외 5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개발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m <sup>2</sup> )	해제면적 (m <sup>2</sup> )	해제사유	비 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계		6필		1,397,661	1,971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273		35,504	156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철탑부지 편입	
"	"	"	"	산273-1		1,002,149	993		
"	"	남	광천	산82		173,554	194		
		"	"	산98		35,835	270		
"	"	"	"	산104		54,520	154		
		"	"	산118		96,099	20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공 고

##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축주택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신축주택등 현황(안 제61조제1항제64의13호 및 별지 제63호의13 서식(1)(2)(3)),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14호 및 별지 제63호의14 서식),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15호 및 별지 제63호의15 서식(1)(2))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16호 및 별지 제63호의16 서식) 서식을 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csy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4호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 이라 함)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재정통계의 분석 및 생산 등 재정정책의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dBrain의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dBrain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안 제1조)

- dBrain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 선도

나. 정보원의 사업 범위 (안 제6조)

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 (안 제13조)

- 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되므로

정보원의 사업·운영 재원은 정부가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가.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사용 (안 제2·3조)

- 출연금의 구분계리 및 용도의 사용제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도모

## 3. 의견 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사무관, 전화: 044-215-5491, 팩스: 044-215-81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339-012)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1호**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5. 1. ~ 2013. 12. 31.(사용기한 : 2014. 3.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22.7억원
6. 모집방법 : 온라인·방송·서신모금, 모금함 설치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9.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13-10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2	이대정랑	'13.5.1.	문화예술재능기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063-277 -3620	문화예술 교육과	신규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단계적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 1) 단계적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지구의 개발에 어려움 발생
- 2) 일정면적 이상의 대단위 지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
- 3)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나.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6조의5)

- 1) 일부구역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필요

2)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례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업체 등의 참여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 유도

다. 개발이익채투자 비율 명확화(안 11조의5)

1) 영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채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2) 개발이익채투자 비율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비율인 100분의 25로 개선

3) 개발이익채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완화로 개발사업활성화 유도

라.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1)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인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개선

3)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31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레저활동 확산에 따라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발급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행정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 외부장치의 정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5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5호

「하천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토지의 매수청구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하천법상 각종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일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낚시금지 등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개정(안 제98조제4항)

- 1) 현재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의 금지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업무의 연계성,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금지구역 지정권자와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매수청구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정착물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 1) 현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대상토지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매수청구신청인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 따라서 토지 위의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허가(법 제30조), 하천점용허가(법 제33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법 제38조), 하천수 사용허가(법 제50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안 법 제89조 삭제)

- 1)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점용허가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없는 데 반해, 「하천법」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 가중 및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중임
- 2) 하천법상 허가 시 부과되는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21, fax 044-201-5557)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나. 제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제의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다.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역·지구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지구등의 현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운영방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사고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안 제13조 개정)

나. 증거보전범위를 전자적·비전자적 기록물로 확대(안 제35조 개정)

다.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안 제8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호 94,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 화 : 044-200-6125, 팩스 044-200-6139

##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5호

201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sup>1)</sup>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소방방재청장

### 1. 총괄 개요

#### □ 내진율 제고 분야

○ 2012년도에 13종 24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1종 127,023개소<sup>2)</sup> 중 38.4%(48,805개소) 내진율<sup>3)</sup> 확보됨(전년 대비 0.2%p 증가)

#### □ 재정투자 분야

○ 201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9개 중앙행정기관 및 13개 시·도가 178,292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전년 대비 12.5%p 증가)

###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 시설별 추진결과

#####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13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903동 중 16.4%(8,519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03%p 증가)

○ 2012년도 3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② 배수갑문 및 방조제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5개소 중 77.9%(7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1%p 증가)

##### ③ 공항시설(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소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5개소 중 92.4%(13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 2012년도 1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④ 농업기반시설(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 저수지와 총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1.7%(45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1.2.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에 의한다.(내진기준 강화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대상시설물 증가분 3,822개소가 추가)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4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805개소 중 63.4%(21,44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p 증가)
  - 2012년도 9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5%(1,130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p 증가)
  - 2012년도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⑦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197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 2012년도 기존 내진성능이 확보된 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목적의 내진보강을 실시함.
- ⑧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전체 60개소 중 45.0%(2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 ⑨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전체 503개소 중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곳 없음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⑩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기타)
- 전체 635개소 중 86.8%(55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⑪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2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85개소 중 88.8%(1,31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0%p 증가)
  - 2012년도 12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⑫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48.3%(1,86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1.1%p 증가)
- ⑬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전체 18개소 중 현재 11.1%(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 ⑭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체 2,354개소 중 23.3%(54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 ⑮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고속철도 264개소는 중 16.7%(4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9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⑯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전체 660개소 중 35.3%(2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7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⑰ 공동구

- 전체 22개소 중 50.0%(1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기 내진성능이 확보된 1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진 보강을 실시함.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⑱ 학교시설(모든 시설)

- 80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0,131동 중 21.7%(4,365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4%p 증가)

## ⑲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 12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334동 중 81.7%(1,906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5%p 증가)
- 2012년도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⑳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2개소 중 35.8%(11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대비 0.3%p 증가)

##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 ①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126백만원 예산투입됨
  - 전기통신시설 : (내진보강) 1개소 1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6백만원

##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시설 80개소 27,116백만원이 예산투입됨

## ③ 농림수산식품부

- 전체 2,593백만원 예산투입됨
  - 배수갑문 : 2개소 836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 4개소 1,757백만원

## ④ 지식경제부

- 전체 11,002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17백만원
  - 석유저장시설 : (내진보강) 6개소 112백만원
  - 발전용시설 : (내진보강) 29개소 6,3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4개소 4,508백만원

## ⑤ 보건복지부

- 전체 36,589백만원 예산투입됨
  - 병원시설 : (내진보강) 12개소 35,6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910백만원

## ⑥ 국토해양부

- 전체 34,593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항시설 : (내진보강) 1개소 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225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1개소 4,5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5,120백만원
- 철도시설 : (내진보강) 44개소 22,696백만원
- 고속철도 : (내진성능평가) 98개소 939백만원
- 항만시설 : (내진성능평가) 79개소 1,020백만원

## ⑦ 행정안전부

- 전체 279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소 279백만원

## ⑧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32,895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4개소 32,7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22백만원

## ⑨ 경찰청

- 전체 127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7백만원

## ⑩ 서울특별시

- 전체 9,794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 : (내진보강) 2개소 5,400백만원
  - 도시철도 : (내진보강) 2개소 2,7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42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3개소 26백만원

## ⑪ 부산광역시

- 전체 1,000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소 4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99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백만원

## ⑫ 대구광역시

- 전체 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백만원

## ⑬ 인천광역시

- 전체 1,628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소 66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2개소 1,2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34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51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9백만원

## ⑭ 대전광역시

- 전체 1,13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1,071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63백만원

## ⑮ 경기도

- 전체 8,889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소 9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59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9개소 7,2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5개소 38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69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1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192백만원

## ⑯ 강원도

- 전체 1,74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6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70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8백만원

## ⑰ 충청북도

- 전체 73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4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3백만원

## ⑱ 충청남도

- 전체 2,068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2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0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682만원

## ⑲ 전라남도

- 전체 180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98백만원
  - 공동구 : (내진보강) 1개소 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44백만원

## ⑳ 경상북도

- 전체 667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5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25백만원

## ㉑ 경상남도

- 전체 659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61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0백만원

## ㉒ 제주도

- 전체 5,131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5,131백만원

## 3. 참고사항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중 9종시설(수문,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원자력시설)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고, 2종시설(삭도·궤도, 유기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없어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에서 제외함.

○ 본 공시내용은 2012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로 '13.3.23 정부조직개편 이전 기관명을 사용함.

## 【붙임】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12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sup>4)</sup>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2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 계		127,023	244	48,805	0.2%	38.4%
1. 공공건축물	동	51,903	13	8,517	0.02%	16.4%
2. 배수갑문	개소	95	2	74	2.1%	77.9%
3. 공항시설	"	145	1	134	0.7%	92.4%
4. 수문	"	3	-	3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4	452	0.7%	81.7%
6. 다목적댐	"	15	-	15	-	100%
7. 일반댐	"	15	-	15	-	100%
8. 도로시설물	"	33,805	49	21,441	0.1%	63.4%
9.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저장시설	"	264	-	264	-	100%
10. 도시철도	"	1,421	2	1,130	0.1%	79.5%
11. 압력용기	"	1,586	-	1,586	-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	90.8%
13. 리프트	"	229	-	229	-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6	197	-	100%
15. 송유관	"	4	-	4	-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	45.0%
17. 수도시설	"	503	-		-	0%
18. 어항시설	"	635	-	551	-	86.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1	-	100%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29	1,319	2.1%	88.8%
21. 철도시설	"	3,860	44	1,864	1.1%	48.3%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2	-	11.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4	-	549	-	23.3%
24. 고속철도	"	264	-	44	-	16.7%
25. 항만시설	"	660	-	233	-	35.3%
26. 공동구	"	22	1	11	-	50.0%
27. 학교시설	동	20,131	80	4,365	0.4%	21.7%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12	1,906	0.5%	81.7%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1	119	0.3%	35.8%

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 상 기준적용

### ●문화재청공고제2013-16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제주흑우)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명칭 : 제주흑우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15-7(제주축산진흥원 내)
  - 지정대상 : 제주도 축산진흥원내 사육중인 흑우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 \* '13. 4월말 현재 제주축산진흥원 내 136두 사육 중
  - 지정사유
    - 기원전부터 오랫동안 제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옛 문헌에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큼
    - 전신 모색이 흑색이며 체구가 왜소하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한우, 칠포,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고유 혈통을 가진 고유 재래종으로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사양관리를 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가치가 있음.
  -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 가. 문화재청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avana@korea.kr](mailto:havana@korea.kr)
  - 나.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64-710-3425 전송 064-710-3419
    - 홈페이지 : [www.jeju.go.kr](http://www.jeju.go.kr)

###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5. 7. ~ 2013. 5.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 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1	김영복	(482-130) 경기 양주시 옥정동 176번지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116동 604호	615,000	2010.11.24.10:24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2	박부용	(426-82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7길 8, 201호(부곡동)	1,134,000	2012.01.12.00:30	음성 생극도신	폐문부재	
3	서정묵	(573-791)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60, 106-908호 (소룡동 동아아파트)	549,000	2012.05.28.13:59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4	강우섭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1,158,000	2011.09.11.15:02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5	이종리	(423-802) 경기 광명시 광삼로 13번길 22-16 지층 102호 (광명동)	615,000	2010.11.01.21:38	음성 대소오류	폐문부재	
6	이준호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안강에덴타운)	1,122,000	2011.11.28.10:01	단양영업소	이사감	
7	박영삼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장항동, 메리트 원빌딩, 302호) 나라건기(주)내.	525,000	2012.12.06.16:10	제천영업소	수취거절	
8	강태원	(343-927) 충청남도 당진시 어리로 15, (채운동)	964,800	2010.11.08.17:35	제천 봉양장평	수취인불명	
9	양인모	(157-240) 서울 강서구 공항동 41-80 3층	567,000	2012.02.24.16:52	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10	박상현	(487-8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88-22 인창하이츠 빌라 8-401	844,200	2011.06.20.05:55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 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11	임태봉	(360-80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13번지 6호 18통 4반	984,000	2011.02.14.16:05	제천 봉양장평	이사감	
12	김대식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길 219-53,	844,200	2011.03.10.14:51	제천 봉양장평	수취인불명	
13	장명열	(217-812)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3930번길 18-3, (조양동)	936,000	2011.09.04.03:06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4	이동수	(681-803) 울산광역시 중구 구루미8길 21, (다운동)	974,400	2010.11.17.18:54	음성 대소오류	수취인불명	
15	방동제	(791-94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2리 1161번지 삼도드림파크 102동 406호	615,000	2011.02.16.10:28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16	백영진	(612-8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69번길 27, (반여동)	1,683,000	2012.03.20.21:02	괴산 연풍적석	폐문부재	
17	정호춘	(230-800)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77번지 1호 대성주택 202호	615,000	2011.02.21.03:59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18	최영수	(619-961)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456번지	888,000	2012.04.27.13:14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19	김현준	(561-8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5길 5-4, (우아동3가)	1,098,000	2012.04.16.09:51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20	박현준	(402-060)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7(도화동)	615,000	2010.11.24.13:04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21	윤병진	(405-78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165번길 24, 110동 1602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1단지숲속마을@)	615,000	2010.11.10.11:24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22	최명식	(449-926)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부대로1408번길11-25 2동101호( 제일하이츠빌라)	1,845,000	2011.04.01.11:54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23	박승현	(704-9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야외음악당로11길 28 (성당동 )	1,182,000	2011.10.01.07:55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24	김종현	(730-808) 경북 구미시 봉곡동 217번지 4호 시화빌리 501호	1,845,000	2010.11.05.07:32	단양 매포하곡	폐문부재	
25	김주환	(730-932)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4-3, 303호(황상동,신광원룸)	549,000	2012.04.27.12:45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26	남경식	(730-130)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2길 9-26, 202호 (임은동 영남네오빌)	1,086,000	2012.06.09.08:5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27	오명기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7길 25, (관음동)	609,000	2011.02.16.08:53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28	임상현	(390-770) 충북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101-1303	1,086,000	2012.06.20.00:49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29	박금석	(200-944)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193번길 17, (퇴계동)	735,000	2012.12.03.12:39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30	박노광	(390-758) 충북 제천시 하소동 주공아파트4단지 406동709호	1,098,000	2012.05.11.21:0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 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31	정병수	(151-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60, 104동 2103호(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615,000	2011.01.26.18:54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32	정병일	(390-813)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1리 600-6	802,200	2011.11.22.21:15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33	김종철	(390-899) 충북 제천시 내제로 29가길 7	567,000	2012.02.11.05:4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4	장석찬	(390-100) 충북 제천시 칠성로15길 6-1, 104호 (청전동)	561,000	2012.02.22.02:52	충주 가금가흥	폐문부재	
35	조희관	(390-899) 충북 제천시 청전동 171-9	549,000	2012.05.11.04:2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6	지준근	(390-12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 55-7, (영천동)	579,000	2011.11.15.05:10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37	오재맹	(390-150) 충북 제천시 화산동 남경빌 C동203호	3,330,000	2012.03.27.23:37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8	김범준	(390-240) 충북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402동 506호	615,000	2010.10.26.13:50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39	정철순	(343-82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5길 16-4, 모닝하우스 303호	1,122,000	2012.03.21.19:30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40	김광수	(220-120) 강원 원주시 치악로 2047, 103동 106호 (태장동, 성호아파트)	609,000	2010.12.22.02:24	음성 감곡오향	폐문부재	
41	정기환	(790-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109번길 7, 102동 304호(인덕동 흥성빌라)	1,086,000	2012.07.04.20:4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42	전일완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814,400	2012.03.05.19:09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43	김수창	(363-941)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29-12, 103동 106호(대신하나로아파트)	1,845,000	2010.12.18.19:50	제천 봉양장평	이사감	
44	김수창	(363-941)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29-12, 103-106(대신하나로아파트)	543,000	2012.06.21.21:43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45	정달용	(604-84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189번길 34, (장림동)	1,122,000	2012.03.16.10:00	괴산 소수길선	폐문부재	
46	민기	(429-867)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3길 1, 202호 (정왕동 마이홈빌리지)	993,600	2010.11.03.12:55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47	김종원	(420-8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13, (도당동)	1,110,000	2012.03.23.19:24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48	정병용	(345-80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2길 41, 101호	1,158,000	2011.11.17.03:30	음성 원남하당	폐문부재	
49	임상준	(158-859)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44-12 2/2 B101호	1,146,000	2011.12.27.16:41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50	전동길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70번길 55-3 (동부리 336-2)	1,086,000	2012.06.12.21:3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 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51	강상원	(750-040) 경북 영주시 하망동 283-4 3/2	537,000	2012.08.06.21:52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52	김신성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450번지 단봉아파트 106호	1,809,000	2011.02.25.13:4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3	고복준	(530-755) 전남 목포시 하당동 비파아파트 101동1106호	735,000	2012.11.07.12:52	감곡영업소	폐문부재	
54	박대용	(361-8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2동 1902호	907,200	2012.02.10.16:33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55	이선식	(369-82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33-1, 산성빌라 302호	1,098,000	2012.04.27.14:16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56	정용길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473-4	1,332,000	2012.04.09.17:23	남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57	박명수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101동 1301호(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	768,600	2012.05.23.05:04	제천영업소	보관기간경과	
58	김재천	(790-8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13-1 (동해면 )	609,000	2011.05.10.14:40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59	김영식	(580-807) 전북 정읍시 연지동 615번지 3/5	1,110,000	2012.04.17.13:00	괴산 괴산동부	폐문부재	
60	김영구	(791-1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1,050,000	2012.11.26.17:56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61	변태성	(621-80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6번길 10-22	537,000	2012.08.21.17:06	연풍영업소	주소불명	
62	김승기	(390-899)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22, 205-203 (청전동, 청전2차주공아파트)	525,000	2012.11.15.10:48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63	조경인	(390-767)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 10동 407호 (청전동 주공아파트1단지)	549,000	2012.06.09.05:01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64	문명철	(604-80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210번길 11, 감천정수빌라 402호(감천동)	567,000	2012.01.03.21:13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65	김병철	(695-9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7길 2,	325,800	2012.06.25.16:57	괴산영업소	수취인부재	
66	박상현	(487-8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88-22 인창하이츠 빌라 8-401	1,110,000	2012.04.25.06:05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67	신훈동	(209-8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111, 375번지 1호	609,000	2010.12.20.18:58	제천 봉양장평	폐문부재	
68	김재천	(790-8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13-1 (동해면 )	603,000	2011.04.08.12:2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69	박성진	(626-05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2길 48, (중부동)	579,000	2011.09.29.18:31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 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70	주춘규	(570-745)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 69, 210동 209호 (모현동1가 모현주공아파트)	537,000	2012.03. 29.02:11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71	김명덕	(430-04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02-10 17/3	573,000	2011.12. 30.18:25	연풍영업소	폐문부재	
72	김용호	(462-8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42번길 17-8, (금광동)	561,000	2012.02. 27.12:15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73	박대중	(790-862)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246번길 22, 501호(해도동,동보시장상가@)	549,000	2012.05. 07.19:11	단양영업소	수취인부재	
74	김석구	(369-824)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덕진연립 401호	597,000	2011.07. 07.13:41	음성영업소	수취인부재	
75	홍성문	(220-834)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64-0 5동 102호 (소초면 우창연립)	603,000	2011.05. 04.09:52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76	송석용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계족로517번길 17, 105호 (용전동)	1,230,000	2011.02. 16.01:05	음성 원남 하당	폐문부재	

\*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증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울산해양경찰서장

####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디에이치환경기술

나. 대표자 : 김 중 창

다.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55-1(☎ 052-261-2200, FAX 052-261-2227)

라. 사업종류 : 방제업(해상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일자 : 2013. 5. 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제 울산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에이치1호(유조선, 66.47톤)</li> <li>- 디에이치7호(유조부선, 543.41톤)</li> <li>- 삼양2001(방제작업선, 54톤)</li> </ul> </li> <li>○ 보유장비(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li> <li>예열기(2), 점도유 이송펌프(1), 오일팬스, 유흡착재</li> </ul> </li> </ul>	법인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0, 2013고단491(병합), 2013고단492(병합), 2013고단493(병합), 2013고단494(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유성종합운수  
소재지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213  
대표자 청산인 임현철

검 사 정재욱, 김영태, 방기태, 강길주, 한상진(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2001. 2. 15.자 2001고약858	전북98사4508	김창곤	2000.05.10. 03:12/ 2000.10.21. 01:30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보은검문소	제한속중위반
2000. 11. 15.자 2000고약13432	전북98사4513	유장윤	2000.04.25. 06:53	경남 의령군 정암리 정암검문소 지방도 67호선	제한속중위반
2000. 9. 14.자 2000고약10870	전북82사6326	심재철	2000.04.09. 16:22	전북 정읍시 용동면 용호리 용동과적차량검문소	제한속중위반
2001. 8. 13.자 2001고약9590	전북98사4508	김창곤	2001.03.06. 02:40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송정리 논산검문소	제한속중/폭/ 길이위반
2004. 4. 22.자 2004고약2387	전북98사4513	유장윤	2003.10.27. 20:48	남해지선 180킬로 지점 서부산영업소	제한속중량위 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보기업 유한회사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4-5 해운빌딩 201호  
                               대표이사 박순옥

검           사                   한상진(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9. 01:46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35킬로미터 부산방향 장수영업소에 그 사용인인 이필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높이제한 기준 4.0미터를 0.34미터 초과하여 4.34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 높이제한 4.0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532, 2013고단533(병합), 2013고단534(병합), 2013고단535(병합),  
                                       2013고단536(병합), 2013고단537(병합), 2013고단538(병합), 2013고단539(병합),  
                                       2013고단540(병합), 2013고단541(병합), 2013고단542(병합), 2013고단543(병합),  
                                       2013고단544(병합), 2013고단545(병합), 2013고단546(병합), 2013고단547(병합),  
                                       2013고단548(병합), 2013고단549(병합), 2013고단550(병합), 2013고단551(병합),  
                                       2013고단552(병합), 2013고단553(병합), 2013고단554(병합), 2013고단555(병합),  
                                       2013고단556(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례운수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23-1  
                               대표이사 김세영

검           사                   박성규, 이등원(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은행제한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158	전북7아4040	윤대룡	1993.12.31. 18:32	경부고속도로 305.4킬로 지점 동대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028	전북7아4064	최창구	1994.02.01. 00:33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1845	전북7아4057	김재선	1993.11.26. 22:37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263	전북7아4067	김용희	1994.02.15. 21:2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3. 9.자 1994고약601	전북7아4063	백철호	1993.07.16. 19:3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20.자 1994고약3123	전북7아4002	최동호	1993.12.21. 01:07	대전시 대덕구 서봉동 소재 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7.자 1994고약2733	전북7아4052	이태우	1994.02.19. 20:50	경남 진양군 진성면 상촌리 국도2호선	제한속중위반
1994. 5. 7.자 1994고약3028	전북7아4039	최환열	1993.12.18. 13:4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7.자 1994고약2827	전북7아4065	이기노	1994.02.18. 23:30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상행선 420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112	전북7아4039	조용득	1994.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1956	전북7아4006	정병진	1993.11.23. 14:07	한국도로공사 부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8. 8.자 1994고약5711	전북7아4062	서병두	1994.06.10. 00:05	경남 함양군 수동면 소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8. 8.자 1994고약5590	전북7아4063	김성용	1994.02.2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631	전북7아4002	최동호	1994.03.16. 20:5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6. 14.자 1994고약4109	전북7아4021	김종갑	1994.03.25. 20:4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6. 1.자 1994고약3662	전북7아4062	조수곤	1994.03.10. 17:33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곡리 앞 노상	계측불응위반
1994. 6. 1.자 1994고약3654	전북7아4074	정정석	1994.03.10. 06:45	경남 창원군 동면 덕산리 이동식 과적검문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4. 6. 1.자 1994고약3375	전북7아4011	최봉선	1994.03.17. 01:5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20.자 1994고약3167	전북7아4003	양재식	1994.03.08. 00:11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5. 20.자 1994고약3160	전북7아4057	김재선	1994.03.10.01: 0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4. 10. 12.자 1994고약7658	전북7아4004	유동주	1994.04.20. 13:03	경부고속도로 수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10. 12.자 1994고약7654	전북86사2228	송재규	1994.07.18. 15:19	경남 울산군 언양면 동부리 42번지 부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9. 26.자 1994고약7186	전북7아4061	류평수	1994.05.24. 20:34	판교-구리간 26.8킬로 지점 구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9. 7.자 1994고약6729	전북7아4062	서병두	1994.06.15. 16:00	전북 익산군 삼기면 석불사거리	제한속중위반
1994. 9. 7.자 1994고약6875	전북7아4063	유영중	1994.07.13. 08:30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검문소	제한총중량위 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569, 2013고단570(병합), 2013고단571(병합), 2013고단572(병합),  
2013고단573(병합), 2013고단574(병합), 2013고단575(병합), 2013고단576(병합),  
2013고단577(병합), 2013고단578(병합), 2013고단579(병합), 2013고단580(병합),  
2013고단581(병합), 2013고단582(병합), 2013고단583(병합), 2013고단584(병합),  
2013고단585(병합), 2013고단586(병합), 2013고단587(병합), 2013고단588(병합),  
2013고단589(병합), 2013고단590(병합), 2013고단591(병합), 2013고단592(병합),  
2013고단593(병합), 2013고단594(병합), 2013고단595(병합), 2013고단596(병합),  
2013고단597(병합), 2013고단598(병합), 2013고단599(병합), 2013고단600(병합),  
2013고단601(병합), 2013고단602(병합), 2013고단603(병합), 2013고단604(병합),  
2013고단605(병합), 2013고단606(병합), 2013고단607(병합), 2013고단608(병합),  
2013고단609(병합), 2013고단610(병합), 2013고단611(병합), 2013고단612(병합),  
2013고단613(병합), 2013고단614(병합), 2013고단615(병합), 2013고단616(병합),  
2013고단617(병합), 2013고단618(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흥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30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하은수, 강신엽, 김영규, 이승호, 조정환, 최병한, 원성준, 이승영, 조정철,  
온성욱, 김광로, 이기동, 정성윤, 정중근, 문세영, 고경희, 오인서, 김광삼(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7. 10.자 1995고약4239	전북7아6036	옥윤안	1995.03.11.	경기도 구리시 구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4. 3.자 1995고약1596	전북7아6047	고승남	1994.12.24. 05:42	호남고속도로 48킬로 지점 논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6. 10.자 1995고약3183	전북7아6020	박용덕	1994.12.02. 19:31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5. 2. 3.자 1995고약102	전북7아6030	이영길	1994.09.17. 24:50	나주시 송월동 소재 단속검문소	계측불응위반
1995. 8. 10.자 1995고약5211	전북7아6010	박희문	1995.05.26. 08:50	경남 남해고속도로 지수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5. 8. 10.자 1995고약4971	전북7아6035	최병득	1995.2.29. 17:45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지방도로	제한속중위반
1995. 2. 3.자 1995고약234	전북7아6057	백복현	1994.12.09. 05:08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이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1. 10.자 1994고약10653	전북7아6012	이혜덕	1994.11.04. 18:34	구마고속도로 13.2킬로 지점 화원영업소 과적단속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5. 2. 3.자 1995고약406	전북7차6061	김성귀	1994.08.31. 07:20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이동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5. 6. 10.자 1995고약3689	전북7아6012	이혜덕	1995.03.19. 01:26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12. 7.자 1994고약9389	전북7아3046	고승남	1994.11.05. 03:59	호남고속도로 64.5킬로 이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12. 3.자 1994고약9163	전북7아6041	이정용	1994.08.12. 16:45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이동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5. 9. 11.자 1995고약5986	전북7아6030	김창곤	1995.05.08. 03:4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5. 12. 12.자 1995고약8313	전북7아6035	김대만	1995.08.30. 21:26	경부선 36.6킬로 지점 기흥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5. 8.자 1995고약2575	전북7아6006	박창근	1994.09.07. 14:55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논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2. 3.자 1995고약161	전북7아6035	주성수	1994.11.25. 00:2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5. 3. 6.자 1995고약1376	전북7아6042	이순재	1994.12.05. 03:31	경부선 천안영업소 83.1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5. 4. 10.자 1995고약1949	전북7아6042	신용복	1994.05.04. 17:04	안산선 신갈 37킬로 지점 동수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6. 11.자 1996고약3528	전북7아3049	장재만	1996.03.19. 06:30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5. 7.자 1996고약2464	전북7아6007	유철희	1996.01.08. 04:17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지방도 1004호선	제한속중위반
1996. 6. 7.자 1996고약3381	전북7아6046	조규용	1996.01.03. 19:23	경남 진주시 자수면 청담리 46-14 지수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8. 6.자 1996고약5613	전북7아6064	최학주	1996.04.25. 19:53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9. 9.자 1996고약6290	전북7아6000	조종덕	1996.05.24. 11:03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10. 9.자 1996고약7318	전북80사5321	김춘식	1996.07.24. 21:09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리 봉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5. 29.자 1996고약3021	전북7아6003	이철형	1996.03.22. 03:14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킬로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6. 11.자 1996고약3487	전북7아6047	고승남	1996.02.14. 12:03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7. 1.자 1996고약4074	전북7아6043	이철형	1996.05.09. 11:50	경남 서대구영업소 1.5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6. 5. 1.자 1996고약2436	전북7아6000	박철호	1996.03.14. 03: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리 익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3. 29.자 1996고약1352	전북7차6061	안철면	1996.01.13. 22:43	남해선 348킬로 지점 지수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11. 10.자 1995고약7420	전북7차6066	주병식	1995.08.25. 08:08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11. 10.자 1995고약7369	전북7아6036	전성일	1995.05.27. 23:34	호남고속도로 회덕지점 43킬로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7. 11.자 1996고약4739	전북85사1068	이순재	1996.05.02. 16:21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7. 8.자 1996고약4424	전북7아6014	박영훈	1996.04.17. 02:23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8. 12.자 1996고약5713	전북85사1064	이경희	1995.12.30. 15:10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라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12. 6.자 1996고약8705	전북7아6014	이성식	1995.09.1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7. 31.자 1996고약4982	전북7차6060	김정현	1996.05.02. 22:18	경부고속도로 구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2. 9.자 1996고약482	전북7아3295	박영훈	1995.11.25. 02:44	경기 안산시 일동 국도 42호선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6. 1. 10.자 1996고약29	전북7차6066	주병식	1995.09.07. 07:54	경북 포항시 효곡동 효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10. 1.자 1996고약6948	전북80사5364	최학주	1996.06.21. 19:01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8. 29.자 1996고약5945	전북7아6044	박규석	1996.05.02. 00:4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7. 6. 11.자 1997고약3847	전북80사5314	김태춘	1997.02.20. 02:35	충남 공주시 계룡면 증장동 지방도 691호선	제한속중위반
1997. 2. 12.자 1997고약293	전북80사5374	황문달	1996.12.08. 16:02	정읍시 농소동 정읍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5. 7.자 1997고약2755	전북80사5310	임채효	1997.02.26. 06:48	호남고속도로 91킬로 지점 김제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10. 4.자 1997고약7639	전북80사5365	강효검	1997.07.10. 20:44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함라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7. 6. 3.자 1997고약3361	전북80사5336	장필주	1997.03.04. 15:55	전북 익산시 삼기면 석불사거리 앞	제한속중위반
1997. 5. 10.자 1997고약3083	전북80사5300	장두석	1997.03.08. 06:12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2. 9.자 1996고약453	전북7차6059	심상천	1995.11.17. 01:37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4. 9.자 1996고약1859	전북7아6038	김동우	1995.11.11. 14:04	경부고속도로 83.5킬로 지점 천안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7. 8.자 1996고약4355	전북80사5312	고한경	1996.05.13. 13:58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제한속중위반
1996. 7. 8.자 1996고약4272	전북7차6061	안철면	1996.04.29. 16:19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704, 2013고단705(병합), 2013고단706(병합), 2013고단707(병합),  
2013고단708(병합), 2013고단709(병합), 2013고단710(병합), 2013고단711(병합),  
2013고단71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국민물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30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원성준, 온성욱, 이기동, 하은수, 김영규, 문세영, 정성운(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5. 10. 5.자 1995고약6545	전북7아5658	정영치	1995.07.07. 11:31	강원 춘천시 서면 안보리 국도46호선	제한속중위반
1995. 9. 7.자 1995고약5486	전북7아5663	나중은	1995.05.08. 18:42	영동선 10킬로 지점 용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1. 11.자 1996고약10530	전북82사5647	국윤택	1996.09.23. 03:31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12. 10.자 1996고약9259	전북82사5608	최유식	1996.09.17. 20:05	경기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앞	제한속중위반
1996. 12. 11.자 1996고약9537	전북82사5604	박유신	1996.09.18. 22:05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제한속중위반
1996. 1. 10.자 1996고약48	전북7아5698	정 실	1995.09.16. 15:54	충남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11. 1.자 1996고약7725	전북83사5624	유재안	1996.06.22. 10:00	군산시 경암동 세풍합관 앞 도로	제한속중위반
1996. 9. 12.자 1996고약6577	전북7아5636	김종래	1996.05.27. 23:55	충남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이인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7. 6. 30.자 1997고약4687	전북82사5672	이희구	1996.04.17. 15:55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도17호선	제한속중위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713, 2013고단714(병합), 2013고단715(병합), 2013고단716(병합),  
2013고단717(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남원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38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정성윤, 김광삼, 이기동, 은진수(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6. 7. 1.자 1996고약3998	전북84사1217	김중명	1996.05.12. 14:12	호남고속도로 정읍톨게이트	제한속중위반
1997. 2. 12.자 1997고약229	전북84사1200	임형재	1996.11.23. 16:18	판교-구리선 27.5킬로 지점 구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2. 12.자 1997고약238	전북84사1200	임형재	1996.11.30. 11:44	경기 구리시 경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27.5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6. 7. 11.자 1996고약4738	전북84사1210	임시명	1996.04.30. 12:57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목천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4. 7.자 1997고약1488	전북84사1225	고인수	1997.01.19. 15:48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제한속중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8, 2013고단719(병합), 2013고단720(병합), 2013고단721(병합), 2013고단722(병합), 2013고단723(병합), 2013고단724(병합), 2013고단725(병합), 2013고단726(병합), 2013고단727(병합), 2013고단728(병합), 2013고단729(병합), 2013고단730(병합), 2013고단731(병합), 2013고단732(병합), 2013고단733(병합), 2013고단734(병합), 2013고단735(병합), 2013고단736(병합), 2013고단737(병합), 2013고단738(병합), 2013고단739(병합), 2013고단740(병합), 2013고단741(병합), 2013고단742(병합), 2013고단743(병합), 2013고단744(병합), 2013고단745(병합), 2013고단755(병합), 2013고단756(병합), 2013고단757(병합), 2013고단758(병합), 2013고단759(병합), 2013고단760(병합), 2013고단761(병합), 2013고단762(병합), 2013고단763(병합), 2013고단764(병합), 2013고단765(병합), 2013고단766(병합), 2013고단767(병합), 2013고단768(병합), 2013고단769(병합), 2013고단770(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흥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38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이승호, 조정환, 원성준, 박성규, 이등권(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3. 8. 11.자 1993고약5660	전북7차6059	유용옥	1993.06.24. 12:15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월리 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3. 9. 13.자 1993고약6853	전북7아6036	박연신	1993.07.20. 15:40	전북 익산군 삼기면 구정리 지방도 718호 과적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3. 11. 4.자 1993고약8440	전북7아6036	박연신	1993.06.04. 01:5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3. 10. 27.자 1993고약8111	전북7아6037	심상천	1993.06.24. 12:20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월리 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3. 11. 4.자 1993고약8494	전북7아6013	배종열	1993.07.02. 07:47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31.4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3. 12. 22.자 1993고약9968	전북7차6050	김대봉	1993.10.08. 17:15	인천 중구 항동 소재 100주년기념탑 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3. 12. 6.자 1993고약9527	전북7아6041	이정용	1993.09.18. 22:50	경남 산천군 신안면 원지리 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3. 11. 13.자 1993고약8973	전북7아6025	오석권	1993.06.26. 19:46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과적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1. 14.자 1993고약10818	전북7아6047	고승남	1993.10.04. 20:27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킬로 지점 서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1. 14.자 1993고약10808	전북7아6003	서동환	1993.11.19. 18:13	경남 함안군 군북면 강주리 지방도로	제한속중위반
1994. 1. 4.자 1993고약10636	전북7아6045	권기로	1993.11.19. 07:3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과적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3. 12. 6.자 1993고약9430	전북7차6052	김봉춘	1993.09.22. 20:50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12. 21.자 1994고약9850	전북7아6019	서경원	1994.11.29. 16:05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량위 반
1995. 1. 10.자 1994고약10320	전북7차6044	최종섭	1994.06.26. 04: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5. 1. 10.자 1994고약10723	전북7차6062	김영록	1994.10.14. 05:33	호남선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4. 12. 30.자 1994고약10086	전북7아6001	김재택	1994.07.08. 16:08	호남고속도로 이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1. 10.자 1994고약10371	전북7아4932	최학주	1994.12.25. 06:05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11. 10.자 1994고약8409	전북7차6059	유용옥	1994.09.07. 20:15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11. 4.자 1994고약8051	전북7아6006	박창근	1994.06.29. 02:4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측요구불응
1994. 8. 10.자 1994고약6204	전북7차6060	한귀석	1994.04.22. 02:58	경남 구마 고속도로 상행선 대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9. 26.자 1994고약7106	전북7아6042	신용복	1994.06.27. 12:28	호남고속도로 79킬로 지점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9. 26.자 1994고약7323	전북7아6048	이윤재	1994.06.01. 17:25	경북 포항시 효곡동 효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9. 26.자 1994고약7103	전북7차6062	김영록	1994.05.21. 02:45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대리 앞	계측요구불응
1994. 8. 8.자 1994고약5684	전북7아6018	강덕수	1994.03.16. 02:15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앞	계측요구불응
1994. 7. 7.자 1994고약4640	전북7아8016	이상태	1994.04.21. 18:25	경부선 안성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630	전북7차6056	한준섭	1994.03.15. 00:12	대전시 대덕구 석불동 임시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8. 8.자 1994고약5652	전북7아6006	박창근	1994.06.17. 00:32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7. 15.자 1994고약5004	전북7아6048	이윤재	1994.05.10. 14:45	경부선 동대구영업소 305.4킬로 지점 상행선 노선	제한속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648	전북7아6030	이영길	1994.04.29. 10:05	전북 군산시 소룡동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331	전북7아6044	최중섭	1994.01.12. 00:2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6. 1.자 1994고약3477	전북7차6058	유용옥	1994.03.13. 01:30	경남 진양군 사봉면 사곡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20.자 1994고약3161	전북7아6045	권기로	1994.02.15. 19:10	경남 진양군 진성면 소재 이동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4. 5. 7.자 1994고약2958	전북7아6005	조계익	1994.02.19. 01:10/ 1994.03.12. 01:24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호주유소 이동검문소/ 경북 경주군 안강읍소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10. 5.자 1994고약7591	전북7아6016	이상태	1994.06.20. 07:27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	제한속중위반
1994. 12. 7.자 1994고약9496	전북7아6005	조계익	1994.10.10. 16:45/ 1994.11.04. 20:45	88고속도로 하행선 남원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3. 30.자 1994고약1704	전북7아6047	고승남	1994.02.03. 15:26	호남고속도로 회덕지점 119킬로 지점 정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4. 3. 30.자 1994고약1731	전북7아6043	최학주	1994.01.08. 22:45/ 1994.01.24. 05:50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2236	전북7아6003	서동환	1993.12.17. 02:38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유소 앞	제한속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815	전북7아6001	이훈구	1994.06.02. 22:56	호남고속도로 이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3. 9.자 1994고약1138	전북7아6041	이정용	1993.11.19. 22:30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지방도 1032호선	제한속중위반
1994. 4. 11.자 1994고약1881	전북7아6031	김기수	1993.11.26. 20:29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5. 7.자 1994고약2805	전북7아6013	배종호	1994.02.08. 15:20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3. 9.자 1994고약625	전북7아6025	오석권	1993.11.23. 15:10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발산리	제한속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493	전북7아6014	박점수	1994.04.10. 02:4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779, 2013고단780(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 북구 양산동 610-2 양산동금광아파트 단지내상가 3층 302호  
 대표이사 김은예  
 검 사 박성규(기소), 최수경(공판)  
 관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5. 1. 10.자 1994고약10930	광주9아5142	김재천	1994.09.09. 01:40/ 1994.9.30. 19:51	불상의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 경부고속도로 317킬로 지점 경산영업소	계측요구불응/ 제한속중위반
1995. 1. 10.자 1994고약10733	전남98자2527	○○○	1994.7.14.	경남 산청군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계측요구불응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5, 2013고단806(병합), 2013고단807(병합), 2013고단808(병합),  
2013고단809(병합), 2013고단810(병합), 2013고단811(병합), 2013고단812(병합),  
2013고단813(병합), 2013고단814(병합), 2013고단815(병합) 도로범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흥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38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이등원, 박성규, 최병한(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486	전북7차6055	김낙원	1993.11.04. 16:27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킬로 지점	제한속중위반
1994. 7. 7.자 1994고약4483	전북7아6025	오석권	1994.04.23. 05:00	전남 진도군 진도읍 노진리 소재 이동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3. 9.자 1994고약856	전북7차6057	백복현	1993.12.13. 14:40	경남 의령시 의령읍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1994. 6. 1.자 1994고약3605	전북7차6054	이연노	1994.04.06. 22:2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4. 9. 7.자 1994고약6803	전북7아6061	김성귀	1994.06.02. 02:58	대전시 대덕구 덕봉동 검문소 앞길	제한속중위반
1994. 11. 28.자 1994고약8921	전북7아6032	주병식	1994.06.25. 22:58	경북 달성군 논공면 의전리 국도5호선	계측요구불응
1994. 7. 27.자 1994고약5367	전북7아6025	오석권	1994.03.18. 22:3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4. 5. 7.자 1994고약2882	전북7아6027	전세진	1993.09.08. 15:24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제한속중위반
1994. 8. 8.자 1994고약5692	전북7아6035	최병득	1994.05.31. 19:45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삼거리 앞	제한속중위반
1994. 7. 15.자 1994고약5079	전북7아6048	이윤재	1994.2.13.	경남 진양군 사봉면	제한속중위반
1994. 5. 7.자 1994고약2981	전북7아6014	박점수	1994.01.06. 03:2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816, 2013고단817(병합), 2013고단818(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원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 661-2 에일프라자 305  
 대표이사 정병하  
 검 사 원도연, 백운기, 원형문(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판 결 선 고 2013. 4. 18.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7. 9. 13.자 2007고약8636	전북81사2606	백동호	2007.07.25. 10:23	울산선 언양기점 4킬로 지점 울산영업소	제한총중량위반
2006. 11. 22.자 2006고약11950	전북81사2608	이강우	2006.08.17. 11:13	울산선 4킬로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제한총중량위반
2005. 6. 10.자 2005고약4479	전북81사2612	왕성복	2005.03.16. 13:37	호남고속도로 송광사업소 앞	제한총중량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양양통운  
 소재지 부산 금정구 공단로8번길 11  
 대표이사 권오용  
 검 사 김효봉(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 13:24경 서논산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박광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98바6839호 화물차량의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용순

검 사 정희찬(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4. 26. 21:38경 한국도로공사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천규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전 87아5165호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1, 2013고단82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전라통운

소재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775-10

대표이사 이광순

검 사 이병석, 심재철(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제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5. 4. 13.자 2005고약1859	전북88바6053	박종근	2004.11.03. 21:27	전북 정읍시 용동면 오성리	제한축중위반
2005. 7. 19.자 2005고약6589	전남88바6053	박종근	2005.02.28. 19:25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제한총중량위반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3, 2013고단824(병합), 2013고단825(병합), 2013고단826(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송도상운  
소재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775-10  
대표이사 민경윤

검 사 김종범, 이영주, 이선훈, 방봉혁(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제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6. 12.자 2002고약8658	전남88바5730	이동훈	2002.03.29. 09:03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264.5킬로 지점 춘천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2. 12. 26.자 2002고약22660	전남88바5732	임동옥	2002.09.07. 13:58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영업소	제한총중량위 반
2003. 3. 14.자 2003고약1791	전남88바5732	임동옥	2002.11.23. 03:08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35킬로 지점 장수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5. 4. 29.자 2005고약2469	전남88바5742	조철승	2005.01.04. 23:15	호남고속도로 삼례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광해화물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양물산)  
                                   소재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94-10  
                                   대표이사 손철권

검        사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3. 16. 02:10경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김충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산 7아6628호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고,

나. 같은 날 03:32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8, 2013고단829(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하림특수  
                                   소재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93-30  
                                   대표이사 지신학

검        사                    오원근, 이준식(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3. 9. 15.자 2003고약9568	전북98사4151	김용태	2003.06.05. 15:43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함라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지방도 711호선	제한축중위반
2003. 3. 14.자 2003고약1774	전북98사4150	강병호	2003.01.10. 15:00	군산시 대야면 대야인터체인지 앞 전주국도 이동 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남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43-1  
 대표청산인 이종의  
 검 사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18. 15:05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상행선 16.4킬로미터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최재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7아6527호 화물차량의 제2축에 13.1톤 등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1, 2013고단83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용운수  
 소재지 양산시 호계동 793-18 제에이동호  
 대표자 사내이사 이성훈  
 검 사 양인철, 심재철(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제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4. 10. 11.자 2004고약11862	경남99바4134	이현우	2004.06.19. 16:43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제한속중위반
2005. 11. 2.자 2005고약11499	경남99바4134	이현우	2005.07.20. 12:02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35킬로 지점 장수영업소	제한속중량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하나운수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3층 제101-312호  
 대표자 사내이사 이성훈  
 검 사 노로(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12. 12:55경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소재 개정과적검문소에서 그 사용인인 김동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99사7930호 화물트럭을 운행하다가 높이초과로 적발되었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기업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90-3 대표사원 정화자
검 사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1. 20:4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박○○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7차7021호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5 도로법위반
-----	-----------------

피 고 인           대성운수 유한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평동 224-7  
                      대표이사 김성수

검        사           원도연(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7. 21. 00:48경 남해고속도로 10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장지영업소 앞에서 그 사용인인 김창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남 80사7182호 화물차량의 제5축에 11.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날 01:13경 남해고속도로 97.09킬로미터 지점 순천방향 군북영업소 앞에서 위 김창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5축에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6, 2013고단837(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청우물류  
                      소재지  대구 북구 대현동 502-3  
                      대표이사 김승열

검        사           유정호, 백운기(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1. 2.자 2007고약12445	대구82아4057	황진유	2007.11.13. 14:25	호남고속도로 금산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6. 12. 29.자 2006고약13713	대구82아4057	황진유	2006.11.29. 08:02	호남고속도로 서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44, 2013고단845(병합), 2013고단846(병합), 2013고단847(병합), 2013고단848(병합), 2013고단849(병합), 2013고단850(병합), 2013고단851(병합), 2013고단852(병합), 2013고단853(병합), 2013고단854(병합), 2013고단855(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승성운수  
소재지 김제시 황산동 173-6  
대표이사 현수철

검 사 원성준, 박성규(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3. 12. 6.자 1993고약9219	전북7아4203	윤인영	1993.09.03. 16:23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국도23호선	제한속중위반
1994. 01. 04.자 1993고약10133	전북7아4203	윤인영	1993.09.21. 04:07	경기 평택 진위면 가곡리 단속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4. 03. 09.자 1994고약799	전북7아4209	이중호	1993.11.19. 18:29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03. 09.자 1994고약1027	전북7아4217	김용훈	1993.11.30. 18:48	판교-구리간 성남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4. 04. 11.자 1994고약2178	전북7아4247	장정흠	1993.12.06. 01:40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앞	제한속중위반
1994. 04. 11.자 1994고약2056	전북7아4201	전경옥	1993.12.21. 03:10	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룡리 975호선	계측요구불응
1994. 05. 07.자 1994고약3008	전북7아4206	박춘송	1993.12.22. 16:25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리 대진주유소 앞 국도 33호선	제한속중위반
1994. 09. 07.자 1994고약6703	전북7아4210	김기석	1994.02.16. 19:23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킬로 서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09. 07.자 1994고약6719	전북7아4250	운용천	1994.02.17. 00:3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계측요구불응
1994. 05. 07.자 1994고약2955	전북7아4219	주성수	1994.03.01. 10:25	충북 증평영업소 앞 노상	제한속중위반
1994. 05. 07.자 1994고약2806	전북7아4219	주성수	1994.03.15. 15:13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증평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4. 07. 27.자 1994고약5474	전북7아4246	유관희	1994.04.04. 21:40	경남 진양군 진성면 삼거리	제한속중위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90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광해화물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양물산)  
 소재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94-10  
 대표이사 손철권  
 검 사 최수경(공판)  
 판결 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9. 15. 16:00경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노상리 앞 노상에서 그 사용인인 임병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7아6628 화물차량의 제2축에 13.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속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0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서광운송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4층 404호  
 대표사원 구영근  
 검 사 김중호(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2. 23. 06:23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앞 시도 14호선에서 그 사용인인 권영산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 84바1024호 화물차량의 제1축에 11.25톤, 제2축에 11.8톤, 제3축에 16.35톤, 제4축에 15.6톤 등 총중량 5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0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문지동 260-1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영자  
 검 사 권현유(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17. 03:46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213.4킬로미터 지점 서논산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송광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전 87아5606호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19톤, 제5축에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09, 2013고단910(병합), 2013고단911(병합), 2013고단912(병합), 2013고단913(병합), 2013고단914(병합), 2013고단915(병합), 2013고단916(병합), 2013고단917(병합), 2013고단918(병합), 2013고단919(병합), 2013고단920(병합), 2013고단921(병합), 2013고단922(병합), 2013고단923(병합), 2013고단924(병합), 2013고단925(병합), 2013고단926(병합), 2013고단927(병합), 2013고단928(병합), 2013고단929(병합), 2013고단930(병합), 2013고단931(병합), 2013고단932(병합), 2013고단933(병합), 2013고단934(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검 사 온성욱, 김광로, 이승영, 원성준, 이기동, 이등원, 김영규, 박성규, 최병한, 김재현, 하은수, 강신엽, 정성윤, 정중근(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및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2. 3.자 1995고약539	대구7아2656	백은기	1994.10.05. 13:25	전주시 소재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장에서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까지	제한속중위반
1995. 8. 10.자 1995고약5354	강원7아2164	안재호	1995.04.06. 01:34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8. 10.자 1995고약5006	강원7아2164	안재호	1995.03.31. 07:45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톨게이트	제한속중위반
1995. 8. 10.자 1995고약4962	강원7아2164	안재호	1995.03.04. 14:42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10. 5.자 1995고약6549	전북7아1206	김점용	1995.07.10. 06:0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국도17호선	제한속중위반
1995. 9. 29.자 1995고약6225	전북7아1175	신홍기	1995.07.05. 17: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국도 29호선	제한속중위반
1995. 9. 29.자 1995고약6226	전북7차1704	배홍수	1995.07.05. 17: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국도 29호선	제한속중위반
1995. 12. 14.자 1995고약8465	전북7아1247	진현곤	1995.08.04. 08:49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3. 6.자 1995고약951	전북7아1213	박경우	1994.09.06. 02:29	대구시 동구 대림동 대림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6. 1. 10.자 1995고약8955	전북7아1182	김석중	1995.11.20. 13:55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톨게이트 앞	제한속중위반
1996. 1. 10.자 1995고약8864	전북7아1151	박기봉	1995.10.25. 22:26	호남고속도로 79길로 지점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6. 1. 10.자 1995고약8995	전북7아1192	박이근	1995.10.26. 08:42	호남선 상행선 전주톨게이트	제한속중위반
1995. 2. 3.자 1995고약80	전북7차1701	최강호	1994.10.20. 04:57/ 1994.11.10. 05:00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4. 6.자 1995고약1660	경북5아2275	김명복	1994.12.07. 15:01	인천시 중구 항동 100주년기념탑검문소	제한속중위반
1995. 5. 8.자 1995고약2623	전북7아1209	이현식	1995.02.15. 07:20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6. 10.자 1995고약3384	전북7차1724	임남기	1995.03.15. 03:32	호남고속도로 이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5. 6. 10.자 1995고약3387	경북8아2296	조준배	1994.04.08. 20:44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은행제한 위반
1995. 6. 10.자 1995고약3390	전북7차1723	이항수	1994.12.07. 14:56	인천시 향동 소재 100주년기념탑 과적검문소	제한총중량위 반
1996. 7. 8.자 1996고약4190	전북80사1375	전한국	1996.04.25. 04:25	호남선 익산영업소	제한축중위반
1996. 7. 31.자 1996고약5050	전북7아1187	김만두	1996.05.06. 15:21	호남고속도로 삼례영업소	제한축중위반
1996. 8. 6.자 1996고약5447	전북7아1234	안정수	1996.01.28. 15:45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대야검문소	제한총중량위 반
1997. 5. 13.자 1997고약3180	전북7아1178	박정석	1996.05.09. 09:14	경기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남양검문소 지방도 306호선	제한축중위반
1997. 6. 7.자 1997고약3545	경북81아1261	김명복	1997.03.13. 05:38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영업소	제한총중량위 반
1996. 9. 9.자 1996고약6262	전북80사1330	권명철	1996.05.22. 06:54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제한축중위반
1996. 9. 4.자 1996고약6171	대전87아3733	김상용	1996.04.30. 23:09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축중위반
1996. 9. 12.자 1996고약6305	전북80사1356	양덕진	1996.05.21. 07:23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제한축중위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96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중암운수  
 소재지 대전 유성구 문지동 260-1  
 대표사원 구상용  
 검 사 강익중(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0. 30. 15:40경 전남 담양 동정에서 그 사용인인 김영만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전 88아8237호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5톤, 제3축에 11.25톤, 제4축에 11.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초과운행한 것이다.

##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86, 2013고단987(병합), 2013고단988(병합), 2013고단989(병합), 2013고단990(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제삼특장 주식회사  
소재지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40-1  
대표이사 유준상

검 사 김광삼, 이완규, 김영태, 이성일, 윤대진(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7. 1. 7.자 1996고약9935	경기7하7063	박종식	1996.06.28. 14:42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리	제한속중위반
1999. 3. 31.자 1999고약2346	경기93아6464	심용운	1998.12.16. 01:5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검문소	제한속중위반
2002. 7. 15.자 2002고약11071	경기93아6464	심용운	2002.03.28. 01:58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389-33 장수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4. 11. 19.자 2004고약11699	경기93아6464	심용운	2004.07.01.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4. 6. 29.자 2004고약5774	경기93아6480	최충규	2004.04.09. 23:54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91, 2013고단992(병합), 2013고단993(병합), 2013고단994(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일양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28-2  
 대표자 사내이사 정기용

검 사 박문수, 김종범, 심재현, 노로(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3. 11. 7.자 2003고약11418	경기90자9002	임영택	2003.08.01. 15:51	남해고속도로 산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3. 2. 24.자 2003고약1285	경기90자2852	심병탁	2002.08.23. 05:45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고가도로	제한총중량위반
2002. 7. 15.자 2002고약10680	경기90자2852	심병탁	2001.08.21. 02:5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장호원검문소	제한폭위반
2001. 1. 9.자 2000고약17005	경기90자9002	정도영	2000.11.18. 05:36	88고속도로 함양영업소	제한속중위반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9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부산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용당동 123 신선대콘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4층  
 대표이사 박중구

검 사 윤대진(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0. 14:4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그 사용인인 염규남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산 99바6887호 화물차량의 제4축에 12.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96, 2013고단997(병합), 2013고단998(병합), 2013고단999(병합), 2013고단1000(병합), 2013고단1001(병합), 2013고단1002(병합), 2013고단1003(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대표이사 박남도, 박재억

검 사 이기선, 한동영, 윤대진, 정희도, 김종범, 이성일, 김완규, 김효봉(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제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자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1. 8. 13.자 2001고약10810	경북80사1613	유종국	2001.06.12. 03:09	호남선 전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8. 11. 6.자 1998고약11843	대전87아1002	임형택	1998.09.18. 14:15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국도 30호선	제한높이위반
2005. 3. 3.자 2004고약16196	경남81사8058	박성훈	2004.10.27. 23:31	중부내륙선 충주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2. 12. 26.자 2002고약23007	경남81사1274	김태수	2002.09.05. 03:48	구마선 서대구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3. 5. 15.자 2003고약3608	경남81아1122	김형태	2003.01.07. 21:02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5. 3. 10.자 2004고약16655	경남81사1045	최윤섭	2004.11.15. 23:13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2. 8. 26.자 2002고약13749	경남81사1274	김강석	2002.02.27. 05:36	구마고속도로 화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3. 1. 24.자 2002고약24836	경남81사1274	이진국	2002.11.06. 06:47	구마고속도로 화원영업소	제한속중위반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1004, 2013고단1005(병합), 2013고단1006(병합), 2013고단1007(병합),  
2013고단1008(병합), 2013고단1009(병합), 2013고단1010(병합) 도로범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중앙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04-9

공동대표이사 정광래, 안형선

검 사 정성윤, 이병길, 최성철, 한동영, 정희찬, 정재욱, 김완규, 이병석(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7. 6. 3.자 1997고약3365	전북80사9002	이병철	1996.12.11. 16:34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제한속중위반
1997. 6. 30.자 1997고약4876	전북80사9005	김상인	1997.02.17. 13:51	경기 하남시 하산골동 203 동서울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7. 4. 8.자 1997고약1705	전북80사9004	송길호	1997.01.11. 01:09	신갈-안산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8. 10. 9.자 1998고약9797	전북80사9016	이윤수	1998.03.19. 04:39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제한속중위반
1998. 8. 1.자 1998고약6208	전북80사9012	정진호	1998.03.05. 21:48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제한높이위반
2001. 1. 9.자 2000고약16902	전북80사9020	김성환	2000.08.25. 10:57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산 59-1 서평택영업소	제한속중위반
2001. 10. 17.자 2001고약12556	전북80사9023	황의섭	2000.06.02. 08:15/ 2000.11.21. 07:00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검문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온천 앞 이동검문소	제한높이위반/ 계측요구불응

## 전주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동운수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569-13  
 대표이사 최광식  
 검 사 김완규(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2. 12. 9. 경남 하동군 고전면 도로공사 현장사무소 앞 국도상에서 그 사용인인 천상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80사1701호 화물차량의 제4축에 1.4톤, 제5축에 2.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속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나. 2003. 7. 24. 05:46경 한국도로공사 호남선 177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삼례영업소 앞길에서 위 천상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량의 제5축에 2.25톤의 초과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속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동평티엔엠  
 소재지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17-1  
 대표이사 김인목  
 검 사 이병석(기소), 최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2. 21:09경 울산선 거양기점 4킬로미터 지점 울산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송성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85사2700호 화물차량의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한 12.06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고시제2013-11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5월 7일

경기도지사

1)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6,359,307	감)103,597	86,255,710	

나. 개발제한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비고
변경	시흥시 전역	감)103,597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설치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대야1취락	집단취락지구	대야동 3-23번지 일원		70,338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1	대야1취락	집단취락지구	대야동 3-23번지 일원		69,846		
기정	18	마전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358번지 일원		79,628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18	마전취락	집단취락지구	월곶동 358번지 일원		78,832		
변경	23	안말취락	집단취락지구	물왕동 121-1번지 일원		77,187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23	안말취락	집단취락지구	물왕동 121-1번지 일원		76,926		

나. 취락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야1취락	• 면적 감소 (492m <sup>2</sup> )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변경
변경	마전취락	• 면적 감소 (796m <sup>2</sup> )	
변경	안말취락	• 면적 감소 (261m <sup>2</sup> )	

3)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시흥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50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 승인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시행(변경)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외 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 수 복
-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사립(고등학교)
-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1) 부지면적 : 당초 20,775.0㎡ 변경 24,359.00㎡ 증) 3,584.00㎡
- 2) 건축면적 : 당초 5,362.23㎡ 변경 6,140.68㎡ 증) 778.45㎡
- 3) 연 면 적 : 당초 18,489.04㎡ 변경 20,283.80㎡ 증) 1,794.76㎡
- 4)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 5)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4. 1.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증축 및 부지확장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학교	고등 학교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20,775			부고제266호 (73.5.5)	
변경	16	학교	고등 학교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증) 3,584	24,359		

2) 학교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학교 (고등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변경 -면적: 20,775㎡→ 24,359㎡(증 3,584㎡)	① 다목적강당증축에 따른 학교부지확장 ②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정정

3)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지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1025-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2	1025-111	학	111	111	111	-	111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3	1025-10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4	1025-127	학	13,421	13,699	13,421	증)278	13,699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면적 정정
5	산139-126	입	-	3,306	-	증)3,306	3,30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185,560/ 186,510
								(주)동부산프라자	해운대구 우동 957-40				950/ 186,510
합 계			20,775	24,359	20,775	증)3,584	24,359						

[별첨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 건물	1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1,277.39	22.72	1,300.11
		1층	교육연구시설	1,858.58	223.47	2,082.05
		2층	교육연구시설	1,611.87	182.62	1,794.49
		3층	교육연구시설	1,676.74	182.62	1,859.36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4층	교육연구시설	1,674.74	182.62	1,859.36
		5층	교육연구시설	784.32	36.43	820.75
			계	8,885.64	830.48	9,716.12
기존 건물	2동	1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2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3층	교육연구시설	134.75	-	134.75
			계	415.53	-	415.53
금회 증축 건물	7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설비관련제실,HALL)	214.59	-	214.59
		1층	교육연구시설(시청각실)	778.45	-	778.45
		2층	교육연구시설(다목적강당)	736.36	-	736.36
		3층	교육연구시설(화장실)	65.36	-	65.36
			계	1,794.76		1,794.76
합계				11,095.93	830.48	11,926.41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건물	3동	1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3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4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계	-	2,661.00	2,661.00
기존건물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	297.11	297.11
			계	-	297.11	297.11
기존건물	5동	1층	교육연구시설(주차장,전기실)	-	725.03	725.03
		2층	교육연구시설(식당)	-	707.87	707.87
		3층	교육연구시설	-	725.06	725.06
		4층	교육연구시설(강당)	-	485.13	485.13
			계	-	2,643.06	2,643.06
기존건물	6동	1층	교육연구시설	-	855.99	855.99
		2층	교육연구시설	-	922.99	922.99
		3층	교육연구시설	-	469.70	469.70
		4층	교육연구시설	-	507.54	507.54
			계	-	2,756.22	2,756.22
합계				-	8,357.39	8,357.39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 1) 업 체 명 : (주)지엔피
- 2) 대 표 자 : 노 시 준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ICTECH 3층
-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 5) 지 정 번 호 : 제28호
- 6) 지 정 일 자 : 2013. 5. 1.

●경기도공고제2013-60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
(주)동인엔지니어링 (안길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7-1 남정시티프라자 604호	수질 (경기북부 제61호)	2013. 5. 1	신규등록

**상 훈**

‘철도경찰 창설50주년 기념 유공’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 진 훈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김 중 용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구 연 섭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 철 희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송 기 영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 태 숙	국무총리표창

2013. 5. 1.  
(대통령)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5월 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4658	2013-95	이종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성명불상	1	LESPO 검정색 자전거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5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품 명	수량
2013-213	13압제8	류동민외 2	특수절도 등	불상	1	효성 슈퍼캡 49cc 오토바이	6,000원